

제2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12 월 6 일

여 수 시 장

장기영 인



여수시 조례 제2147호

붙임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1부

여수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여수시의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 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여수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이하 “사이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전담인력 관리
2.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3. 사이버보안 교육
4. 자체 진단·점검
5.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6. 사고대응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